

의안번호	제 280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p>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안</p>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 출 연 월 일	2008년 10월 6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 신축이전과 충북체육회관 증축 및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 및 대체취득 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방법과 사업규모를 변경하고
- 진천소방서의 청사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균유지를 진천군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도유지와 교환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북학사 신축이전》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외 6필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2,692㎡ 건물 지하1·지상10층 연 12,586㎡
- 사업기간 : 2007. 12 ~ 2009. 9
- 사 업 비 : 45,000백만원
 - ※ 변경내역
 - 추진방법 : 신축 → 매입
 - 부지매입 : 3,600㎡ → 2,692㎡(감 908㎡)
 - 건물신축 : 10,000㎡ → 12,586㎡(증 2,586㎡)
- 투자계획 : 2009년 - 45,000백만원
- 변경사유 : 충북학사 이전사업 추진방식 및 내역 구체화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
- 증축규모 : 735m²
- 사업기간 : 2007. 4 ~ 2008. 12
- 사 업 비 : 1,293백만원

※ 변경내역

- 증축규모 : 2개층 1,468m² → 1개층 735m²(감 733m²)
- 사 업 비 : 1,830백만원 → 1,293백만원(감 537백만원)
- 투자계획 : 2008년 - 1,293백만원
- 변경사유 : 층고제한으로 증축규모(2층→1층) 축소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외 8필지
- 매입규모 : 9필지 5,347.1m²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62외 3필지 859m²(시험실 등 신축예정지)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외 1필지 4,330m²(")
 -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외 2필지 158.1m²(지분취득)
- 사업기간 : 2008. 10 ~ 2008. 12
- 사 업 비 : 2,032백만원

※ 변경내역

- 매입대상 : 도내일원 → 옥천 옥천 금구 40외 8필지
- 매입규모 : 55,000m² → 5,347.1m²(감소 49,652.9m²)
- 사 업 비 : 2,592백만원 → 2,032백만원(감소 56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 2008년 - 2,032백만원
- 변경사유 : 대체취득 대상지 확정

□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교환》

- 교환대상
 - 취득(군유지) : 소방청사 부지 등
 - 진천 진천 장관 6-2외 5필지 9,932.8㎡ 1,345백만원
 - 처분(도유지) : 화풍이월체육공원 조성부지
 - 진천 이월 송림 130외 29필지 14,851㎡ 1,129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0 ~ 2008. 12
- 사업비 : 217백만원
- 투자계획 : 2008년 - 217백만원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5)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취득	1 건	9,932.80	1,345,453			
		처분	1 건	14,851.00	1,129,860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진천 진천 장관 6-2외 5필지	9,932.80	1,345,453	08.9-12	점유 또는 필요한 재산을 교환확보 하여 효율성 제고	진천군수
		처분	진천 이월 송림 130외 29필지	14,851.00	1,129,860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매입대상 토지내역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고 (용도)
	총계 16필지		8,039.1	21,145,370,600	
	소계 7필지		2,692.0	19,113,200,000	충북화사 신축 이전부지 (주)대원
1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	대	551	3,912,100,000	
2	서울 영등포 당산 121-65	대	357	2,534,700,000	
3	서울 영등포 당산 121-66	대	314	2,229,400,000	
4	서울 영등포 당산 121-275	대	393	2,790,300,000	
5	서울 영등포 당산 171-1	대	327	2,321,700,000	
6	서울 영등포 당산 121-280	대	605	4,295,500,000	
7	서울 영등포 당산 121-281	대	145	1,029,500,000	
	소계 9필지		5,347.1	2,032,170,600	
1	옥천 옥천 금구 40	학교 용지	20,284중 4,330	1,645,400,000	충북과학대학 학교부지 (옥천군)
2	옥천 옥천 금구 85				
3	옥천 옥천 문정 480-1	학교 용지	21,845중 158.1	60,370,600	" (지분취득)
4	옥천 옥천 문정 480-3	도로			
5	옥천 옥천 문정 480-4	도로			
6	옥천 옥천 금구 262	학교 용지	223	326,400,000	" (국가)
7	옥천 옥천 금구 262-2		313		
8	옥천 옥천 금구 268-1		113		
9	옥천 옥천 문정 493		210		
	이	하	여	백	

공유재산 교환대상 토지내역

□ 도유지(처분)

(단위:m²,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30필지		14,851	1,129,860,000	
1	진천 이월 송림 130	답	3,242	145,890,000	체육시설 부지
2	" 609- 3	답	585	35,100,000	"
3	" 609-30	대	241	28,920,000	"
4	" 609-51	답	311	18,660,000	"
5	" 609-52	대	337	40,440,000	"
6	" 609-53	잡종지	985	118,200,000	"
7	" 609-54	도로	317	19,020,000	"
8	" 609-55	답	3,729	261,030,000	"
9	" 609-56	답	332	26,560,000	"
10	" 609-57	답	268	21,440,000	"
11	" 609-58	하천	599	35,940,000	"
12	" 609-59	잡종지	122	14,640,000	"
13	" 609-60	답	215	12,900,000	"
14	" 609-61	대	297	35,640,000	"
15	" 609-62	도로	228	13,680,000	"
16	" 609-63	잡종지	100	12,000,000	"
17	" 609-64	하천	321	19,260,000	"
18	" 609-65	대	214	25,680,000	"
19	" 609-66	대	183	21,960,000	"
20	" 609-67	대	303	36,360,000	"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21	진천 이월 송림 609-68	대	263	31,560,000	체육시설지
22	" 609-69	도로	735	44,100,000	"
23	" 609-70	잡종지	151	18,120,000	"
24	" 609-71	전	200	24,000,000	"
25	" 609-75	대	42	5,040,000	"
26	" 609-76	잡종지	8	960,000	"
27	" 609-77	잡종지	427	51,240,000	"
28	" 609-78	잡종지	39	4,680,000	"
29	" 609-79	대	15	1,800,000	"
30	" 609-80	대	42	5,040,000	"

□ 균유지(취득)

(단위: m²,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6필지		9,932.8	1,345,452,600	
1	진천 진천 장관 6-2	전	1,825.0	155,125,000	소방청사
2	" 행정 876	답	4,084.0	285,880,000	비축토지
3	진천 덕산 한천 501	답	2,852.8	119,817,600	"
4	진천 광혜원 광혜원 529-136	대	390.0	214,500,000	소방청사
5	" 529-139	대	388.0	283,240,000	"
6	" 529-140	대	393.0	286,890,000	"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조 제 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